

2020년도 제8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5. 21.(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분과위원장), 최승수, 박정인,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7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708건(안전번호 제2020-28798호~29926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0-28798호는 네이버 오디오 동호회 카페 이용자가 음원이 재생되고 있는 오디오 장비를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경우 카페 게시판 전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사안 공유와 기준 확정을 위해 해당 안전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함.

안전번호 제2020-28799호~28800호는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28801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상물 없이 우리말 자막파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28802호~28824호는 네이버 밴드에서 최신 영화를 제공한 사안임. 동일한 복제·전송자가 최근 개봉 영화를 제공한 점, 누구나 게시물을 볼 수 있거나 회원 가입만 하면 게시물을 볼 수 있어 해당 밴드의 폐쇄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28825호~28835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이

자동인증, 크래킹 파일 또는 제품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65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8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7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6쪽의 OSP명, 방송사명, 저작물명, 게시물명, 민원인 신고 내용, 7쪽의 민원인 신고 내용, OSP명, 8쪽의 저작물명, 출판사명, 9쪽의 밴드명, 10쪽의 밴드명, 저작물명, 댓글 내용, 11쪽의 밴드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밴드명, 저작물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이므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 D 위원: 게시물이 특정될 수 없도록 제1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 중 해당 내용은 비식별 처리해야 함.
- A 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OSP명, 방송사명, 저작물명, 게시물명, 민원인 신고 내용, 출판사명, 밴드명, 댓글 내용, 밴드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어도비시스템즈', '위너브라더스', '소니픽처스', '넷플릭스', '월트디즈니', '유니버설픽처스'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소송대리 내지 보호활동, 조정,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님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28798호~29926호로 게시물 수는 모두 1,708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8798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카페 '▼▼▼▼ ▼▼▼▼' 이 사용자가 2020. 5. 13. 오디오 장비 브랜드 '▼▼▼(▼▼▼▼▼▼▼▼)' 스피커로 재생되는 가수 '▼▼▼'의 '▼▼ ▼▼ ▼' 음원을 직접 촬영하여 그 영상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에 직접 접속하여 영상물을 재생하면서)게

시자는 네이버 오디오 동호회 카페에서 음원이 재생되고 있는 오디오 장비를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음원 ‘▼▼ ▼▼ ▼’ 한 곡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카페는 오디오 시스템 정보 공유를 위해 2015년 개설된 것으로 보임. 회원 수는 약 44,096명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사무처 직원은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해당 카페에 직접 회원 가입한 후 등업하였고, 이에 심의대상 게시물을 포함한 카페 내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음. 위원님들께서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음원의 합법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20-2879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게시자는 오디오 동호회 카페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스피커 음질을 자랑하기 위해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음원 한 곡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합법 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함.
- D 위원: 단순히 오디오 시스템 정보 공유를 위한 목적의 카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는 카페의 게시판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게시판명은 ‘▼▼▼▼ ▼▼’임. 해당 게시판에는 음원이 재생되고 있는 오디오 장비를 촬영한 영상물이 다수 게시되어 있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한 곡 전체 분량임. 음원 전체 분량이 아닌 일부만 재생되고 있는 영상물이라면 오디오 시스템 정보 공유 목적인 카페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한 곡 전체 분량이라면 판단이 달라짐. 심의대상 게시물 이외의 다른 영상물을 재생하여 보여주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해당 카페에 게시되어 있는 다른 영상물을 재생하면서)지금 재생되는 영상은 가수 ‘▲▲▲’의 음원 ‘▲▲▲▲’이 재생되고 있는 오디오 장비를 촬영한 영상물임. 총 4분 8초 길이의 영상인 것으로 보아, 해당 영상 역시 한 곡 전체 분량을 제공 중인 것으로 판단됨.

민원인은 “▲▲▲ ‘▲▲▲▲▲▲▲▲’ ▲▲▲▲▲ ▲▲▲▲▲ ▲▲▲▲▲ ▲▲▲▲▲ ▲▲▲▲▲ ▲▲▲▲▲. ▲▲▲▲▲▲▲ ▲▲▲▲ ▲▲▲▲▲ ▲▲▲▲▲ ▲▲▲▲▲ ▲▲▲▲▲.”의 내용으로 신고하였음.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민원인이 특정한 것이 아니고, 보호원 직원이 카페 게시글 중 하나를 선별하여 상정한 안전임. 만약 금일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번호 제2020-28798호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카페 내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다른 영상물에 대해서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임.

(게시판 ‘▲▲▲▲▲▲ ▲▲’에 접속하면서)카페 회원들은 가수 ‘▲▲’의 음원 ‘▲▲▲▲▲▲▲’, 가수 ‘▲▲▲▲’의 음원 ‘▲▲▲▲▲▲▲ ▲▲’, 가수 ‘▲▲▲▲’의 음원 ‘▲▲ ▲▲▲▲▲’ 등이 스피커로 재생되고 있는 장면을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제공하고 있음. 대부분 한 곡 전체 분량임.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도 제공되고 있음.

- A 위원: 오디오 장비에 따라 음질 수준에 차이가 있음. 카페 회원들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오디오 장비를 자랑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물을 게시한 것으로 보임.
- D 위원: 최근 고음질 오디오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음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고음질 오디오 장비의 경우 잡음을 제거하고, 깨끗한 음질을 제공하고, 음질 손실을 막아주어 인기가 많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음원 한 곡 전체 분량을 재생한 영상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음원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검토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음. 심의위원회는 음원 전체 분량을 제공하는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의 타당성을 인정해오고 있음.
- A 위원: 음원 한 곡 전체 분량을 전송하는 영상물에 대해 ‘▼▼▼’는 차단조치를 하고 있음.
- C 위원: 특히 해당 카페는 음원이 재생되고 있는 고품질 오디오를 촬영한 영상물을 카페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이에 따라 카페 이용자들은 고음질에 가까운 음원을 이용할 수 있음. 고음질에 가까운 음원을 이용하기 위해 카페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분명 존재할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하지만 음악 관련 전문가 대다수의 의견에 따르면 고가의 스피커라고 할지라도 음악을 재녹음하여 재생하는 순간 원음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음.

- A 위원: 그러나 일반인은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영상물로부터 음원을 이용할 때 원음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크게 느끼지 못할 것임.
- C 위원: 원음손실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 곡 전체 분량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임.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등업 조건을 확인하여 보여주기 바람.
- 사무처 고아라 선임: 회원 가입의 경우 신청 시 즉시 가입이 가능하지만, 게시판 이용을 위해서는 등업이 요구됨. 등업을 위해서는 정해진 수의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여야 하며, 며칠이 소요됨.
- D 위원: 해당 카페는 회원 가입 절차와 승급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는 일종의 비공개 커뮤니티임. 물론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상과 음악을 함께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영상이 음원을 공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의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광고로부터 간접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음원 제공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름. 하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 및 승급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함. 제한적인 커뮤니티에서 제공되는 영상물에 시정조치를 하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에 부결 의견임.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음원을 재생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전송한 사안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

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하지만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이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임. 더욱이 회원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네이버 카페는 '▼▼▼'와 다를 바가 없음. 시정권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함.

- A 위원: 회원 수는 4만 명을 초과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과 달리 볼 수 없음.

- D 위원: 하지만 하나의 게시물당 조회 수는 약 100건임.

한편 해당 카페는 오디오 장비와 관련된 동호회인데, 장비를 이용하여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CD 혹은 음원 구매행위가 동반됨. 오디오 장비 동호회의 활성화는 곧 오디오 장비 산업과 이에 따른 음반 내지 음원 구매 등의 음악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을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임.

- C 위원: 스피커의 기종이 아닌 음원 제목을 게시물명으로 하고 있음.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가수와 음원 제목을 검색하여 해당 카페에 접속한 후 음원을 감상하는 이용자가 존재할 것으로 보임.

또한 회원 가입에 별다른 조건이 없어 누구나 음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음원 한 곡 전체 분량을 제공하는 영상물에 대해 시정권고의 예외로 삼으면 형평성에 어긋남. 이에 시장 수요의 대체성이 있다고 판단됨.

특히 회원 수가 4만 명이라면 더욱 문제가 됨. 게시물 내용으로 판

- 단하더라도 오디오 장비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에 부족함.
- B 위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기타 등의 장비를 이용해 노래하거나, 연주한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공중송신권 침해임. 원곡을 직접 듣고 악보를 채보하였다더라도 복제권 침해에 해당함. 심의대상 게시물 역시 전송권 침해를 이유로 시정권고의 타당성이 인정됨.
 - A 위원: 참고로 '▼▼▼'는 연주한 동영상을 임베디드 링크 설정한 게시물에 대한 민원 신고를 받고 차단조치 내린 바 있음. 또한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도 존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위원회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2단계 심사 기준을 활용하여 엄격하고 심의하고 있음.
 - D 위원: 보호원 차원에서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한 곡 전체 분량이 아닌 2분 이내의 음원을 전송하는 것만 허용한다는 정책 마련을 요청하고, 해당 정책에 따라 카페를 운영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전달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사업 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측에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B 위원: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합당한 조치가 아님.

- A 위원: 보호원이 OSP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동의함. 음원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면 향후 발생할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D 위원: 게시판 설명 부분에 '▼▼ ▼▼ ▼▼▼▼'라고 되어 있음. 대중가요 이외에 클래식 음원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있는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여주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음악가 '▼▼▼▼'가 작곡한 클래식 음악 '▼▼▼▼ ▼▼▼▼'를 촬영한 영상물을 재생하면서)해당 게시물 역시 스피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클래식 음악이 재생되고 있는 오디오 장비를 촬영한 영상물을 전송하고 있음. 다만 대중가요가 재생되는 장면을 촬영한 심의대상 게시물과는 달리 약 1분 길이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대중가요는 클래식과 달리 이용자수와 조회수가 높아 게시자가 한 곡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D 위원: 게시물 내용에 '▼▼ ▼▼▼▼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일반인이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올린 영상에 음원 전체 분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됨.
- A 위원: 음원 한 곡 전체 분량을 촬영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고, 따라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됨.

스피커로 음원을 재생한 장면을 직접 촬영하여 카페 회원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 역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전곡이 아닌 미리듣기 형태로 음원의 일부만 제공한다면 공정 이용 내지 변형적 이용으로서 오디오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음. 이에 OSP 측에서 게시자로 하여금 운영정책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서 저작권 침해 예방하도록 해야 함.

물론 심의대상 게시물은 음원 전체 분량을 제공한 사안이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됨. 하지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오디오 시장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목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됨. 즉 해당 카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원의 공유를 완전 차단할 수는 없음. 카페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정현순 사무처장: 심의대상 게시자에게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신지?
- A 위원: 그러함. 삭제 및 전송중단이 아닌 경고의 시정권고만 해서 2분 이내의 영상으로 동영상 편집하는 등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견임.
- 정현순 사무처장: 자율적으로 정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저작권 침해 예방의 좋은 방법임.
- A 위원: 동의함. 오디오 시장 산업을 고려한다면 적극적 시정조치를 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님.

- B 위원: 그러나 심의안건은 음원 한 곡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복제·전송권 침해이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해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1인의 위원이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에 대해 2인의 위원이 찬성, 1인의 위원은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의견, 1인의 위원이 반대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는 것으로 논의의 방향이 정해지고 있음.

본 건의 경우 시정권고를 할 경우 민원신고에 따라 카페 전체 게시물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적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사안 공유와 기준 확정을 위해 해당 안건을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제안함.

- A 위원: 오디오 동호회 카페의 활동은 오디오 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개인 취미·여가활동의 지원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시너지 창출이 기대됨.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활동을 제한한다면 오히려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이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D 위원: 안건번호 제2020-28798호는 오디오 동호회에서 게시자가 직접 재생되고 있는 오디오 장비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공한 사안임. 오디오 장비 동호회의 활성화는 오디오 장비 산업과 이에 따른 음원 구매 등의 음악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해당 카페는 회원 가입과 승급 절차를 두고 있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는 제한적인 커뮤니티임. 이에 시정권고 부결 의견이나,

이에 대한 적용범위가 확대될 문제가 있어 기준 확정을 위해 전체 회의 부의가 필요함.

- 성원영 전문위원: 그렇다면 불법복제물 공유가 주가 아닌 이외의 목적을 가진 카페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하여 전체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사안을 공유하기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오디오 시장 산업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어 해당 안건은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하도록 함.
- C 위원: 해당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가결 의견이나 사안 공유를 위해 전체위원회 회부하는 것에 동의함.
- B 위원: 동호회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하여 전체위원회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전체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공유하여 오디오 동호회 카페 게시글 전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지 척도를 마련해야 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0-28798호에 대해 2인의 위원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와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에 찬성, 1인의 위원이 경고의 시정권고 찬성, 1인의 위원이 반대하였음. 이에 대한 적용범위가 확대될 문제가 있어 사안 공유를 위해 전체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8799호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 ◇◇◇

◇◇ ◇◇◇(◇◇◇◇◇◇◇◇◇◇◇◇◇◇◇◇) 1화와 3화를 스트리밍 형식으로 한글 자막과 함께 제공 중인 사안임. '◇◇◇ ◇◇◇◇ ◇◇◇'는 2020. 4. 5.부터 현재까지 일본 ◇◇ ◇◇에서 3화까지 방영 중에 있으며,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제작 중단된 상태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에 직접 접속하여 영상물을 재생하면서)게시자가 자체번역을 한 것으로 판단됨. 게시자는 “◇◇, ◇◇ ◇◇◇◇◇◇ ◇◇◇◇ ◇◇ ◇◇ ◇◇◇ ◇◇◇◇ ◇◇◇◇◇◇.”라고 하고 있음. 자체번역한 한글 자막이 있긴 하지만 영상물과 같이 제공하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8800호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 ○○ ○○○ ○○○○○(○○○○○○○○○○ ○○ ○○○ ○○○)' 1화~13화를 한글자막과 무자막 2개의 버전으로 나누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 중인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에 접속하여 영상물을 재생하면서)해당 애니메이션은 2020. 1. 11.부터 현재까지 일본 ○○○에서, 2020. 1. 12.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 ○○○'에서 13화까지 방영 중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28799호~2880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
- B 위원: 안전번호 제2020-28799호, 28800호는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한 사안임.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함.

심위위원회는 종전 심의에서 동영상 없이 자막만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우리말로 번역된 자막파일을 게시한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판단 및 시정권고의 적극적 요소와 소극적 요소는 기존 검토의견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해당 내용 역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참고로 ‘○○○ ○○○○○○○○○○○ ○○○○○’는 2020. 4. 4.부터 현재까지 일본 ○○ ○○에서 5화까지 방영 중에 있음. 해당 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유통되고 있지 않음.

- D 위원: 블로그에 게시된 자막파일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 사무처 고아라 선임: 확인할 수 없음.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블로그에 게시된 자막파일을 제시하면서)동영상 파일과의 싱크가 조절되어 있는 자막파일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복제·전송자가 직접 우리말로 번역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가결로 검토하였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우리말 자막파일을 게시한 사안에 대해 꾸준한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상황임.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2880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현재 불법 유통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영상 산업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가결 의견임.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밴드 개설 목적, 가입의 용이성 내지 폐쇄성, 회원 수의 많고 적음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심의하고 있음. 이에 관한 전체심의위원회의 결정과 심의위원회의 입장은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명, 게시자, 게시물수, 밴드 회원 수, 밴드명을 해당 안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안전번호 제2020-28807호 밴드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그중 안전번호 제2020-28807호는 회원 수가 8명인 밴드 '○○○○○○'임. 영화 '○○○○ ○○ ○○' 뿐만 아니라 국내, 해외 다수의 영화를 제공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0-28809호 밴드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밴드 회원 수가 8명인 밴드 '○○○○○○○○(○○○○○○○○)'임. '○○○○○○'임. 안전번호 제2020-28815호와 동일한 밴드이며, 게시자 역시 동일인임. 영화 '○○○○○○○ ○ ○ ○○○'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링크가 어떤 사이트로 연결되어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라는 사이트로 연결됨.
- A 위원: 밴드 개설일을 확인하여 보여주기 바람.
- 사무처 고아라 선임: 개설일은 확인 불가함. 다만 첫 게시물의 게시일은 2017. 10. 10.임.

링이 필요한 네이버 밴드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취미 공유 목적의 밴드가 영화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는 충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함.

즉 회원 수의 적고 많음은 시정권고의 중요 판단 요소가 될 수 없음. 회원 가입하는 것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면, 밴드 회원 수와 규모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불법복제물 공유의 확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옳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함.

한편 2분과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회원 수가 10명 이내인 밴드를 모니터링 하는데 행정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 대규모 네이버 밴드를 위주로 행정자원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지, 소규모 밴드의 불법복제물 공유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님. 회원수가 1~2명에 불과한 소규모 밴드에서의 비상시적인 콘텐츠 공유까지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대규모 불법복제 사안에 대한 조사와 비교하면, 행정자원 배분의 문제가 있음.

- C 위원: 동의함. 최근 개봉한 영화를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심의대상 게시물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가결 의견임.

- D 위원: 행정 자원 배분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함.

하지만 밴드의 당초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밴드 자체가 공개되어 있고, 검색에 노출되며, 가입이 자유롭고, 밴드명에서 불법복제물 공유의 고의성이 보이는 경우 시정권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반해 소규모 밴드에

대한 시정권고는 보호원이 사법기관도 아닐뿐더러 권리자의 고소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선제적으로 접근하여 차단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음.

물론 안전번호 제2020-28807호 등 심의대상 게시물은 밴드의 당초 개설 목적에 상관없이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안전 중 회원 수 10명 이내의 소규모 밴드에 대한 시정권고는 행정 자원 배분의 문제가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종전 심의위원회의 입장에 따라 부결함이 타당함.

- A 위원: 유튜브 이용자는 게시물 업로드시 공개, 제한공개, 비공개 등으로 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데, 비공개로 설정한 영상에 대해서도 유튜브는 차단조치를 내리고 있음. 이처럼 OSP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함. 물론 시정권고라는 행정조치는 유튜브의 차단조치와 성격을 달리 하지만,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접근한다면 엄격하게 조치해야 마땅함.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해야 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0-28802호~28824호는 3인의 위원이 가결, 1인의 위원이 부결 의견이므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함.
- D 위원: 다만 네이버 밴드 측과 협의를 전제로 밴드 개설시 비공개를 기본 설정으로 변경하는 등에 대해서 행정적인 협의를 필요함. 특히 회원 수가 10명 이내인 소규모 밴드의 개설자는 개설 당시 비공개 설정된 밴드를 개설 후 공개 밴드로 변경할 이유가 없음. 행정적 협의를 한다면 향후 저작권 침해 예방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8825호~2883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총 11개 게시물임.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어도비(Adobe Systems)사의 'Photoshop', 한글과컴퓨터사의 '한컴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Office' 등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주요 권리자들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 또는 라이선스 인증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저작재산권자가 본 건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복제·전송을 허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의 복제물이 정품 프로그램 또는 각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체험용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저작권법이 저작재산권을 부여하고 있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저작물작성 등 '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행위는 저작재산권의 통제범위 밖에 있음. 즉 사용행위의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이용의 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위반이 성립할 뿐 저작재산권침해는 성립하지 아니함. 대법원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기존의 문제의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트라이얼 버전이나 무료로 이미 전송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권리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뿐더러 권리자의 의사를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음. 라이선스의 종류는 기간 제

한형과 기능 제한형 등이 있고, 권리자들이 이용자가 라이선스를 추가로 이용하게끔 유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한다면 권리자의 영업을 방해할 여지가 있음. 그런데 심의대상 게시물은 라이선스 인증이 요구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과 해당 프로그램을 크래킹하는 프로그램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키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크래킹 프로그램 또는 라이선스 키를 전송하는 것만으로는 기술적 보호조치, 구체적으로는 접근통제조치 무력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이해완 교수님 견해에 따르면 시리얼 번호를 배포하는 것만으로는 접근통제조치의 무력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복제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음.

하지만 크래킹 프로그램 또는 라이선스 키를 이용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 복제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남. 크래킹 프로그램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라이선스 키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즉 크래킹 프로그램, 라이선스 키 등의 제공 행위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예컨대 제거, 변경, 우회 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의 전송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됨.

요컨대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복제·전송자의 심의대상 게시물 제공 행위가 불법복제물 전송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하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 또는 복제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는 해당할 수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28825호~2883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지난 3분과 심의위원회에서 웹하드 사이트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이 라이선스 계약 위반인지 아니면 저작권법 위반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된 바 있음.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인 위원들께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슈를 간명하게 정리하여 주신다면 시정권고 심의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C 위원: 일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필요함.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의 종류 등에 대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심의위원회는 명확하고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음.

- B 위원: 주요 소프트웨어 권리자들은 이용자로 하여금 라이선스를 추가로 이용하게끔 유도하고 있는데,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에 대해 시정권고를 함이 적절한지 의문임. 또한 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의 기간 혹은 유형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음. 보호원에서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위법 행위 혹은 라이선스 위반 행위를 모두 파악하고 있음. 일례로 인디애나 주립대 전용 MS 패키지는 총 5개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해당 패키지가 태국 등의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

을 이미 파악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비용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는 동의하는 바임.

- 성원영 전문위원: 과거 심의에서도 증거자료 수집에 대해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음. 해당 심의 이후 보호원은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방향을 보완하였으며, 현재는 채증 과정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복제물이 최신 버전인 여부, 트라이얼 버전 제공 유무를 포함하여 크랙포함 혹은 자동인증 프로그램 있는지 여부 등까지 조사하고 있음.
- D 위원: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함.
- A 위원: 추정은 가능함. 구버전은 제품 키가 없어도 이용 가능하며, 최신 버전은 제품 키가 없다면 비영리 목적에 한하여 이용 가능함.
- B 위원: 심의위원회는 채증자료를 검토하여 심의할 의무가 있음. 충분한 증거자료로부터 심의대상 게시물이 정품 프로그램 또는 체험용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함. 안건번호 제2020-28825호~28835호에 대한 결론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자동인증, 크래킹 파일 또는 제품키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므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함.
- C 위원: 동의함. 해당 안건들은 소프트웨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

향이 작지 않아 가결 의견임.

- A 위원: 웹하드 사이트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정보 또는 복제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고,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D 위원: 안전번호 제2020-28825호~28835호는 타인의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8825호~2883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8836호~29926호는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전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하신 심의대상 게시물 중 일부를 설명하겠음.
(음악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8870호는 2020. 3. 20. 발매된 음원을 웹하드에서 9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음원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Part 2’에 수록되어 있음. ‘멜론 2020년 05월 14일 실시간 TOP 100[10시 기준][320k]’ 압축 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약 100곡 이용 가능함. 함께 제공 중인 다른 음원정보는 2020. 5. 6. 발매된 가수 ‘아이유’의

음원 '에잇'임.

(게임 '드워프 샵'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8937호는 2020. 3. 20. 출시된 게임을 웹하드에서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개발자 및 배급사는 'Potion Junkies'이며, 정품 판매가는 약 10,500원임.

(영화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9218호는 국내 미개봉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27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3월 5일 국내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개봉 잠정 연기되었음. 제작사는 월트 디즈니 픽처스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이고, 국내 배급사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임. mkv 영상 파일에 한글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참고로 2020년 2월 21일 제70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공개되어, 2020년 3월 6일 미국에서 정식 개봉되었는데, 2020년 10주차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함.

(영화 '헌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9240호는 2020. 4. 23.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24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2020. 4. 23.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20. 5. 19. 기준으로 상영 중임.

(방송 '요즘책방 : 책 읽어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9416호는 tvN에서 2020. 9. 24.부터 2020. 4. 27.까지 총 30부작 방영된 방송 프로그램의 29회를 웹하드에서 8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영화 '날씨의 아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9421호는 2019. 10. 30.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5. 21. 재개봉 예정이며, 2020. 5. 27. VOD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임. mkv 영상 파일에 한글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영화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9610호는 국내 미개봉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제공 중인

사안임. mkv 영상 파일에 한글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보호원이 증거자료를 수집한 일자는 2020. 5. 12.임.

(방송 '슬기로운 의사생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0-29646호는 tvN에서 2020. 3. 12.부터 방영 중인 방송 프로그램 9회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8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0. 5. 19. 기준으로 10회까지 방영되었으며, 총 12부작임.

(방송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 사랑의 콜센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9694호는 TV조선에서 2020. 4. 2.부터 방영 중인 방송 프로그램 2회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14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0. 5. 19. 기준으로 7회까지 방영되었으며, 2020. 5. 14. 방영된 7회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기준 22.1%임.

(만화 '카구야 님은 고백받고 싶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9766호는 2017. 10. 25. 출간된 만화를 웹하드에서 3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카구야 님은 고백받고 싶어 177화' 압축 파일을 제공 중임. 참고로 해당 만화는 총 16권 미완결인데, 정품 종이책 단권 판매가는 약 4,950원이며, e북 단권 판매가는 약 2,700원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28836호~29926호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1,656건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 음악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B 위원: 데드카피 형 불법복제물들은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 안전번호 제2020-28836호~29926호 모두 시정권고를 함이

타당함.

- A 위원: 타인의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시정권고를 가결함.
- D 위원: 동의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0-28836호~29926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28798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경우 적용범위가 확대될 문제가 있어 사안 공유와 기준 확정을 위해 해당 안전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함. 그 밖에 안전번호 제2020-28799호~29926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이 제82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8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5. 28.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정인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